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**보도자료**  
2021. 9. 30.(목)

제 목

## 조달청 발주 GRP 복합관 및 맨홀 담합 사건 기소 - 형사 리니언시 신청기업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첫 적용사례 -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
- 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
- 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
※ '21. 9. 29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(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)은 조달청 '나라장터 종합쇼핑몰'의 GRP(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,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) 복합관 및 맨홀 관련 『다수공급자계약\* 2단계 경쟁』 과정에서 경쟁사와 낙찰자,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A社를 **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**로 불구속기소하였음

\* 품질·성능·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(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안가격 등 경쟁을 거쳐 수요기관이 납품대상업체 선정)

- 한편, '20. 12. 10. 시행된 『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』에 따라 **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형사 리니언시 (leniency)\* 신청자는 기소하지 아니함**

\* 담합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

## I

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○ 피고인

- A社 [GRP 복합관 및 맨홀 제조업체]

### ○ 공소사실 요지

- '12. 3.~'18. 10. A의 전무 甲 등은 조달청 '나라장터 종합쇼핑몰'의 GRP 복합관 및 맨홀 관련 『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』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B社, C社 등과 총 359회(계약금액 합계 629억 원 상당)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

## II

# 주요 수사 경과

- '18. 7. 조달청, 대검찰청과의 MOU\*에 따라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 송부
  - \* '18. 1. 19. 『공공입찰에서의 비리근절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검찰청·조달청 간 협력에 관한 협약』 체결
- '21. 2. 경쟁사 및 임직원, 대검찰청에 형벌감면 신청
- '21. 3. 공정위, A社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(미고발)
- '21. 5. 조달청장, A社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
- '21. 6. 공정위, A社 고발
- '21. 7.~9. 관계자 조사

### Ⅲ

## 참고 사항

- '20. 12. 10. 시행된 『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』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한 최초 사례임

#### [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]

- ▶ **[형벌감면]** ①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, ②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100분의 50 감경 구형(지침 제10조 제1, 2항)
- ▶ **[형벌감면의 변경]** 형벌감면 신청자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형벌감면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①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지체없이 기소하고, ②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새로운 구형량을 정하여 구형(지침 제12조 제1항)